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른 구체적 실무례를 중심으로

박영수 변호사
2016. 3. 29.

목차

1.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법령 체계 개관
2. 법인설립 증서 변경(IC에서 ERC, IRC 로 이분화)
3. 예전 IC와 신 ERC, IRC 비교
4. 개정 투자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사항
 - 1) 외투법인의 재투자 시 일정한 경우 베트남 로컬 법인의 투자 규정 적용
 - 2) 외투법인의 지분양수도 작업
 - 3) 정관자본금 증자 작업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사항
 - 1) 정관자본금 증자 작업
 - 2) 정관자본금 납입 기한
 - 3) 기업 형태별 조직구조 및 의사/의결 정족수
 - 4)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information portal 신설

1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법령 체계 개관

작년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 투자법, 기업법이 시행

개정 투자법 및 하위 법령

- ✓ Law No. 67/2014/QH13 dated November 26, 2014 of the National Assembly on Investment;
- ✓ Decree No. 118/2015/ND-CP dated November 12, 2015 of the Government on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Investment Law;
- ✓ Circular No. 16/2015/TT-BKHDT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dated November 18, 2015 issuing standard forms for conducting investment procedures and report on investment in Vietnam;
- ✓ Decree No. 84/2015/ND-CP dated September 30, 2015 of the Government on investment supervision and evaluation
- ✓ Circular 22/2015/TT-KHDT regulated on standard forms of investment supervision and evalua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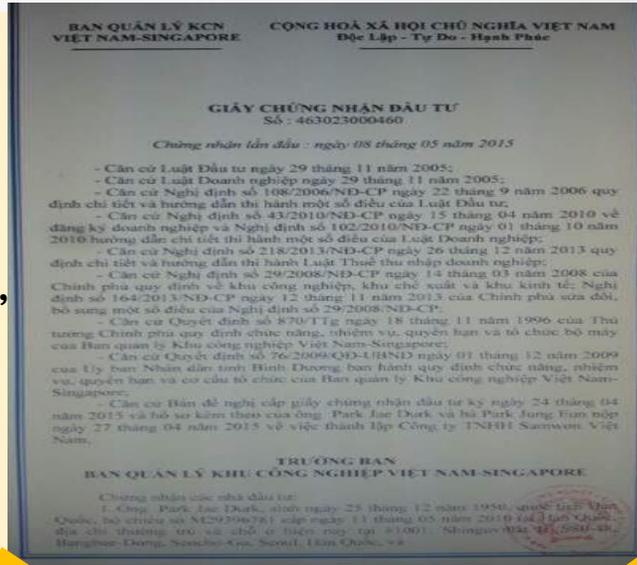
개정 기업법 및 하위 법령

- ✓ Law No. 68/2014/QH13 dated November 26, 2014 of the National Assembly on Enterprises
- ✓ Decree No. 78/2015/ND-CP dated September 14, 2015 of the Government on enterprise registration
- ✓ Circular No. 20/2015/TT-BKHDT dated December 01, 2015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guiding the business registration
- ✓ Statement 9720/BKHĐT-ĐKKD dated November 02, 2015 sending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on notification sample of sea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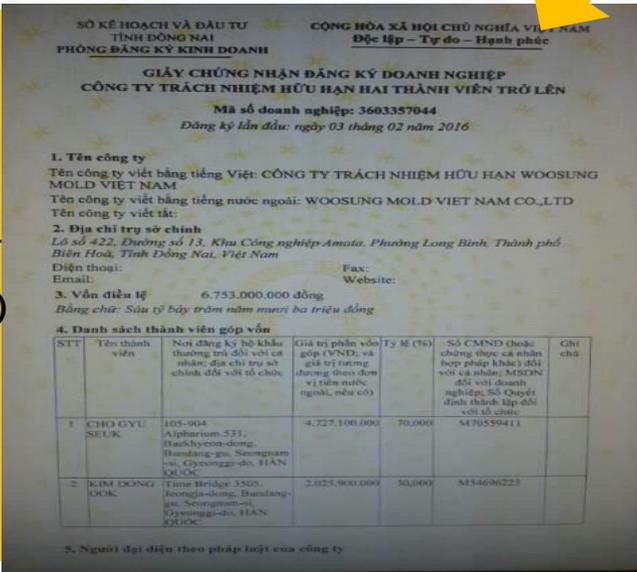
법인설립 증서 변경 (IC에서 ERC, IRC 로 이분화)

예전
투자허가증명서
(Investment Certificate,
“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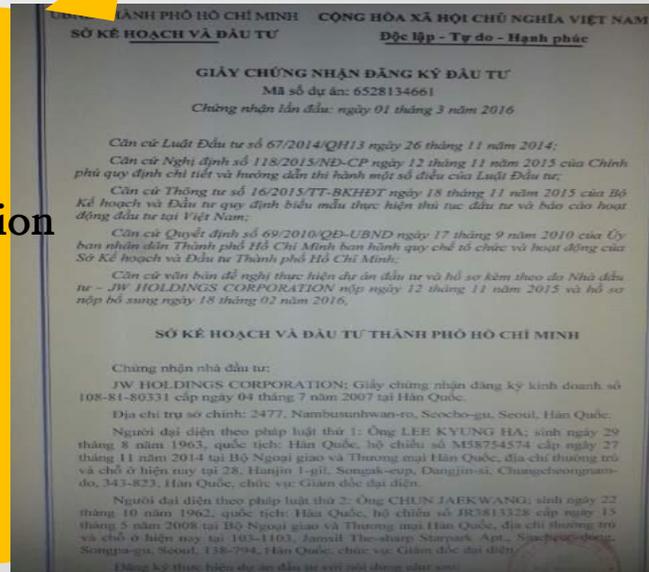


사업등록 내용 / 투자프로젝트 내용

신 기업등록증서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투자등록증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3

예전 IC와 신 ERC, IRC 비교

	IC	ERC	IRC
구성 내용	<p>크게</p> <p>1. 사업등록 내용과</p> <p>2. 투자 프로젝트 내용으로 구성</p>	<p>1. 사업등록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회사 명; - 베트남 회사 주소; - 정관자본금; - 자본금 납입 투자자 리스트 (투자자명, 투자자 주소, 납입자본금, 지분율 등); - 베트남 회사 법적 대표자 정보. 	<p>2. 투자프로젝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명; - 프로젝트 대상 및 범위 (이 부분이 베트남 법인 업종에 해당); - 프로젝트 이행 장소; - 총 투자자본금 및 납입자본금(투자자명, 납입자본금액수, 지분율, 납입방법[현금 또는 현물], 납입 스케줄 -프로젝트 운영 기간; -프로젝트 이행 스케줄.
적용법	투자법, 기업법	기업법	투자법
신규 법인 설립 시	IC 획득으로 족	IRC 취득 -> ERC 취득	
신규 법인 설립 직후 부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감증명서(관할 경찰서); - 세무코드증명서; -법인설립공고 (일간신문지 상에 3회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감 자유롭게 제작 가능(개정 기업법 제44조 참고) 다만 인감 사용 전 관할 시청 DPI에 법인인감등록 - 관할 세무국 세무코드증명서 별도 발급 필요(ERC 발급번호가 세무코드와 일치) - 법인설립공고 (관할시청 DPI에 등록) 	

	IC	ERC	IRC
법인설립 후 증서변경 시	일괄적으로 IC 변경	1. 예) 정관(납입)자본금 증자, 투자자변경, 업종 변경: ERC, IRC 모두 변경 요(ERC 변경 → IRC 변경)	
		2. 예) 베트남 회사 명, 회사 주소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주소 변경 필요 없는 경우), 법적 대표자 변경: ERC만 변경	3. 예) 총 투자자본금만 (정관 또는 납입자본금 제외) 증자: IRC만 변경
관할기관	1. 제조업종: - 공단 내 (관할 시성 공단관리위원회) - 공단 외 (서비스 업종과 동일) 2. 서비스업종: 제출기관 은 관할 시성 계획투자국 ("DPI"), 발급기관은 관할 시성인민위원회("PC")	업종불문, 제조업종인 경우 공단 내외 불문: 관할 시성 DPI(사업자등록부서)	1. 공단 내 제조업종: 관할 시성 공단관리위원회 2. 공단 외 제조업종 및 서비스업종: 관할 시성 DPI (외국인투자등록부서)
소요기간	15 영업일 (일반적인 경우, 실무상 더 소요)	3 영업일	15일

4

개정 투자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사항

4. 개정 투자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사항

1) 외투법인의 재투자 시 일정한 경우 베트남 로컬 법인의 투자 규정 적용



- “A”(foreign investor) 1차 투자→ “B”(foreign-invested business organizations) 2차 투자→ “C”
- “B”의 “C” 설립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 충족 시 베트남 로컬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절차 적용
- 즉 “A”의 “B”에 대한 투자에 관한 규정이 아님.

Article 23. Investments made by “foreign-invested business organizations”

1. When establishing business organizations, contributing capital, buying shares or capital contributions of business organizations; making investments under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in one of the following cases, the foreign investor must satisfy the conditions and follow investment procedures applied to foreign investors:

- a) 51% of charter capital or more is held by foreign investors, or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artners are foreigners if the business organization is a partnership;
- b) 51% of charter capital or more is held by the business organizations mentioned in Point a of this Clause;
- c) 51% of charter capital or more is held foreign investors and the business organizations mentioned in Point a of this Clause.

2. Foreign-invested business organizations in other cases than those mentioned in Points a, b, and c of this Clause shall satisfy conditions and follow investment procedures applied to Vietnamese investors when establishing business organization. when making investment by contributing capital, buying shares, buying capital contribution of business organizations, when making investments under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3. If a foreign-invested business organization that is established in Vietnam has a new investment project, procedures for such investment project shall be followed without having to establish a new business organization.

4.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business organizations to execute investment projects of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invested business organizations.

4. 개정 투자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사항

2) 외투법인의 지분양수도 작업

- 투자자 변경 작업이므로 예전에는 IC 변경으로 족하지만 개정법 상으로는 ERC, IRC 모두 변경 요
- 개정 투자법(개정 투자법 제26조 참조) 상 특이사항으로 지분양수도 시(제3자에게 양도 시) 사전에 관할 기관(공단 내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시성 공단관리 위원회, 공단 외 제조업체 내지는 서비스업체는 해당 시성 계획투자국)에 등록 필요(관할기관 승인 시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15일 내 발급)
- 다만 주식회사 또는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지는 유한 책임회사에서 기존 투자자 간의 지분양수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관할 기관마다 실무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외투법인의 투자자가 제3자에게 지분양도 시 관할기관에 지분양수도 관련 등록 -> ERC 변경 -> IRC 변경 순으로 진행하여야 함.

Article 26. Procedures for making investment by contributing capital, buying shares, or buying capital contributions

1. An investor shall follow the **register** the capital contribution, purchase of shares, or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investor contributes capital, buy shares or capital contributions of business organizations engaged in business lines subject to conditions applied to foreign investors.

b) 51% of charter capital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or more is held by foreign investors and/or business organizations mentioned in Clause 1 Article 23 of this Law after the capital is contributed, or shares/capital contributions are purchased.

.....

3.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capital contributions:

a) The investor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prescrib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at the Service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the province where the headquarter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is situated;

b) If the contribution of capital, purchase of shares/capital contributions satisfies the conditions in Point a and Point b Clause 1 Article 22 of this Law, **the Service of Planning and Investment shall send a written notification to the investor within 15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satisfactory application is received in order for the investor to follow procedures for changing shareholders/members as prescribed by law. If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the Service of Planning and Investment shall notify the investor in writing and provide explanation.

4. 개정 투자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사항

3) 정관자본금 증자작업

- 정관자본금 증자 이슈는 개정 투자법 외에도 개정 기업법 상(이하 별도 목차에서 논의) 여러 이슈가 존재
- 위 개정 투자법 제26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형식(지분양수도, 증자)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기존 외투법인에 대하여 추가 증자 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투법인의 기존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법률 해석상 타당(사건).
- 그러나 호찌민시 DPI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관할기관은 현재 실무상 기존 외투법인에서 투자자의 단순 정관자본금 증자 시에도 ERC, IRC 변경 전에 위와 같이 사전 등록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실무 견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외투법인 기존 투자자의 단순 정관자본금 증자 시에도 관할기관에 정관자본금 증자 관련 등록 -> ERC 변경 -> IRC 변경 순으로 진행하여야 함.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1) 정관자본금 증자 작업

- 예전에는 IC상에 정관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수정 후, 정관자본금계좌(법 상 명칭:외국인직접투자계좌)에 증자된 액수 송금 가능
- 개정 기업법(제68조 제4항 참조)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업체가 정관자본금 증자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성 DPI에 ERC 수정, 이에 따르면 업체에서 선 정관자본금 증자(송금 포함) 후, 사후 ERC 수정으로 해석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정관자본금 증자를 위한 ERC 수정 후, 수정된(즉 증자된) ERC를 은행에 증빙해야만 증자된 정관자본금 송금 가능, 법 상 실무상 차이 존재
- 앞서 개정 투자법에 따라 정관자본금 증자 시 사전 관할기관 등록에 관한 이슈 참고.

Article 68 Change of charter capital

.....

4. Within ten (1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increase or reduction of the charter capital, the company must notify the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in writing. The notice must contain the following main details: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2) 정관자본금 납입 기한

- 개정 기업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자본금 납입 기한이 3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회사 입장에서 위 납입 기한 내에 정관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실례로 위 납입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투자자가 은행(정관자본금 계좌)에 정관자본금 자체 송금 불가능
- 개정 기업법(아래 해당 규정 참조)에 따르면 기 납입한 금액으로 관할 시성 DPI에 ERC 수정하도록 규정(즉 감자)
- 실무상 은행에서는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이 연기된 수정된 IRC를 통해 가능, 그러나 ERC상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은 여전히 기존대로 기재되어 있어 수정의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 및 정관자본금을 아예 납입하지 않았다든지 기 납입한 정관자본금이 너무 적은 액수일 때 관할기관이 수정 자체를 받아줄지 의문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2) 정관자본금 납입 기한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지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Article 48

4. If any member **fails to contribute capital or** fails to contribute in full the amount of capital undertaken, **the company must register adjustment** of its charter capital [and/or] capital contribution ratios of members equal to the amount of contributed capital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last day on which the share of capital contribution is required to be fully paid as prescrib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must be made.

1인의 사원을 가지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Article 74 Contribution of capital for establishment of companies

3. In the case of **failure to contribute in full to the charter capital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company owner must register adjustment** of the charter capital equal to the value of the actually contributed capital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last day on which the charter capital must be fully contributed.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3) 기업 형태별 조직구조 및 의사/의결 정족수

가. 한국 외투법인의 대표적 기업 형태별 내부 조직구조

<p>1인 유한책임회사</p>	<p>사원(투자자)이 회사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irman of the company,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inspector - Members' Council(3인에서 7인으로 구성),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inspector <p>*개정 기업법 제78조 참고</p>
<p>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p>	<p>사원총회, 사원총회 의장, General Director, 감사위원회(사원이 11인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p> <p>*개정 기업법 제55조 참고</p>
<p>주식회사</p>	<p>주주총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General Director, 감사위원회(주주가 11인 이상이면서 회사 주주가 전체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설치 의무)</p> <p>*개정 기업법 제134조 참고</p>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3) 기업 형태별 조직구조 및 의사/의결 정족수

나. 기업 형태별 의사/의결 정족수 변경

구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1인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회사”이면서 “사원총회”를 가지는 경우에만)	전체 사원 2/3 출석 시 *개정 기업법 제79조 제5항 참고	- 일반결의: 출석 사원의 과반수 찬성 - 특별결의: $\frac{3}{4}$ * 개정 기업법 제79조 제6항 참고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정관자본금 65% 이상 보유한 사원 출석 시 *개정 기업법 제59조 제1항 참고	- 일반결의: 출석 사원 지분의 65% - 특별결의: 75% *개정 기업법 제60조 제3항 참고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 주주 출석 시 *개정 기업법 제141조 제1항 참고	- 일반결의: 출석 주주 주식의 51% - 특별결의: 65% *개정 기업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3) 기업 형태별 조직구조 및 의사/의결 정족수

다. 소결

-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관련:

개정 기업법에 따르면 합작투자법인(JVC)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75%, 주식회사는 65%

- 개정 기업법 발효에도 대부분의 회사는 구 기업법에 따른 정관 내용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내부 조직구조 등 정관 내용을 개정 기업법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

5.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구체적 변경사항

4)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information portal 신설



예전에는 베트남 로컬 업체 외에는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개정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 기업 정보 포털

(<https://dangkykinhdoanh.gov.vn>)이 마련되어

(개정 기업법 제4조 제5항)

외투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또한 검색 가능해졌고,

ERC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해짐.

Q&A

감사합니다.

Website	http://www.jplaws.com
호치민 법인	Unit 2, 34 th ,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 Dist.1 , HCMC, Vietnam Tel : 84-8-3910-0619 Fax: 84-8-3910-0620
하노이 지사	East-3101,31Floor,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4 3724 5201~2 Fax: +84 4 3724 5204
서울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Tower 23층 Tel : 82-2-590-2900 Fax: 82-2-590-2908
북경 법인	Suite 805, C Tower, Fang Heng Int'l Bldg, 6 Futong East St., Chaoyang Dist., Beijing, China Tel : 86-10-8478-3161 Fax: 86-10-8478-3162
울란바토르 법인	#202 Evergood B/D, Ikh toiruu, 7 th Khoroo, Sukhbaatar, Ulaanbaatar, Mongolia Tel : 976-7012-7025 Fax: 976-7012-7016